



공익침해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매뉴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GAPYEONG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목 차

I. 공익신고 개요	1
II. 접수 및 조사·처리	2
III.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3
IV. 공익신고자 보상·지원제도	5
V. 공익신고자 보호 운영방안	7

공익침해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매뉴얼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와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I 개요

□ 공익신고 관련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내규」

□ 공익신고의 필요성

- 국민의 건강, 안전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
-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

□ 공익신고의 이해

- 공 익 신 고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
- 공 익 신 고 자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공익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소관행정·감독기관, 관련 공공단체,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 발생기관, 기업 대표자·사용자

○ 공익신고의 종류

- 외부 공익신고 : 조직 구성원 또는 계약상대방 등 업무상, 계약상 **일정한 관계에 있지 않은 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
- 내부 공익신고 : 조직 구성원 등이 **내부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

II

공익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 공익신고의 접수

- 신고방법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
*기명·서면 신고 원칙, 구술신고 예외 인정 /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기재사항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내용
- 공단 부패·비리 및 공익신고 센터 운영
 - **클린신고센터**
 - 공단 감사파트 윤리경영 담당자(031-8078-8021)
 - 공단 직원이 직무 수행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사항 신고
 - 해당 직원은 감사파트 클린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 **CEO 청렴·소통 핫라인**
 - 전자결재시스템 그룹웨어 게시판 내 「CEO 청렴소통 핫라인」 운영
 - 공단 직원 누구나(무기계약직 포함) 고충 및 애로사항 작성
 - 게시글 열람 권한 작성자와 이사장에게만 부여하는 비공개 운영
 - **익명제보(Help-Line)시스템 운영**
 - 갑질피해신고, 성희롱고충신고 외 5개 신고채널 운영
 - 공단 임직원 외 시설이용객, 이해관계자 등 제한없이 제보·신고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 및 IP추적방지를 통한 사건처리의 객관성 확보

□ 공익신고자 보호 수단 ① 비밀보장

- 부패·공익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공익신고의 경우,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
 -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공익신고자 보호 수단 ② 신변보호

- 신변 보호요청 절차



- 신변 보호방법

-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 경호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 공익신고자 보호 수단 ③ 책임감면

구분	주요내용
형의 감경·면제	신고자(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징계·행정처분 감경·면제	신고자(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다른 법령,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손해배상 청구금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 수단 ④ 불이익 조치 금지

- (불이익조치 금지)누구든지 신고자(협조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 ➔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신고 방해·취소강요 금지)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
 -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공익신고자 보호 수단 ⑤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요구

-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통해 공익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불이익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 결정
 - ➔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에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IV

공익신고자 보상 및 지원

□ 공익신고자 보상·지원의 종류

- 보상금 지급 : 국가 및 지자체 수입 회복·증대 시 대상 가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 원까지 지급(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
- 포상금 지급 :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지급(내·외부 공익신고자)
-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지급(내·외부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자 보상 수단 ① 보상금

- 공익신고 보상금 :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 보상금 지급 대상
 - (부패신고)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공익신고) 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자 보상 수단 ② 포상금

- 공익신고 포상금 :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지급 대상
 - (부패신고)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 신고자
 - (공익신고) 위원회 또는 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신고자

□ 공익신고자 보상 수단 ③ 구조금

- 공익신고 구조금 :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피해·비용 지출 사유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적극적 지원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장 철저 준수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임의로 노출, 공개 보도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고서 및 사건 기록 등 외부 유출 방지
-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체계 강구
 - 공익신고 신고·접수 절차 및 보상금, 신변보호 등 보호·지원제도 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기반 확대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
 -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 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내규」
- 공익신고 접수창구 마련 및 담당관 지정
 -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지원, 보호제도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운영

□ 공익침해행위의 선제적 예방

- 공익신고 빈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공익침해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공익신고 빈발분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도 제고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직원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관련 교육 자료를 활용한 자율 교육 실시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신고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홍보활동 전개